

대법원 2020. 10. 15 선고 2020다39634(본소), 2020다39641(반소) 판결

[퇴직금 · 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10. 15 선고 2020다39634(본소), 2020다39641(반소)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0. 5. 14 선고 2019나1507(본소), 2019나1729(반소) 판결

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. 1. 24 선고 2017가소23036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(반소피고)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훈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E

판결 선고2020. 10. 15.

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나1507(본소), 2019나1729(반소) 판결

주문

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그러나 피고(반소원고)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민유숙

대법관김재형

대법관이동원

주심대법관노태악